
과업지시서

「멸종위기 야생생물 대체서식지 정밀조사 위탁연구용역」

2026. 4.



국립생태원
멸종위기종복원센터

멸종위기 야생생물 대체서식지 정밀조사 위탁연구사업

1. 과업 개요

- 사업명 : 멸종위기 야생생물 대체서식지 정밀조사 위탁연구사업
- 소요예산 : 7,000만원(부가세 포함)
-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2026.12.31
-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
 - 근거 :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'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

2. 사업 배경 및 목적

- 대체서식지의 기능 정상화 및 멸종위기종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수탁과제 추진(과제명: 「대체서식지 조성·관리 개선사업」)
- 분류군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대체서식지 정밀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, 조사·분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본 위탁연구사업을 추진

3. 주요내역 사업

가. 분류군별 대체서식지 정밀조사

- ① 대체서식지 정밀조사 대상 지점 현장 조사
 - 대체서식지(47개소)로 이주한 대상종(11종)*의 정착 현황 정밀조사

* (양서·파충류) 금개구리, 맹꽁이, 수원청개구리, 구렁이, (곤충)대모잠자리, (식물)가시연, 백부자, (어류)임실납자루, 큰줄납자루, (무척추동물)기수갈고동, 대추귀고동

- 개체수, 서식여부, 서식환경 적합성 등 현장 조사

② 대체서식지 미흡지역 보고

- 정밀조사 대상지 중 미흡지역 즉시 보고

- 대상종 조사 결과, 현황, 문제점 등 제시

- 대체서식지 미흡지역 합동 조사 지원

나. 맹꽁이·금개구리 eDNA 조사기법 검증

① 맹꽁이,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내 수체 시료 분석을 통한 대상종 서식 유무 확인

- 국립생태원에서 개발한 맹꽁이, 금개구리 eDNA 조사를 위한 마커를 활용하여 대상종 서식 유무 조사

- 기 개발된 마커의 종 특이적 작동 여부 확인

4. 행정사항

가. 과업 수행

○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-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,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일정표, 참여인력 현황, 과업분담내역 및 참여비율, 참여인력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, 사업비 산출내역서, 안전보건환경 방침에 따른 서류,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- 해당 분류군별 전문가로 각 분류군별 조사 책임자 지정 및 책임 조사 수행

-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
-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
-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,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,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
-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, 발주처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, 그 타당성 및 정확성, 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과업추진에 사용된 제반경비의 내역 및 증빙자료(회계검사 소견서 대체가능)를 제출하여야 하며,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
-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(인용시 출처 등 제시)하여야 하며, 그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
-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,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

-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

나. 과업의 변경

-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
-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
다. 과업 수행 성과보고

- 착수보고회,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각 1회 개최하되,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(발표자료 대체 가능)를 제출하여야 함(회의에 필요한 수당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)
- 착수보고(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) : 과업 수행계획 수립 보고
- 중간보고 1회(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경과 시점) : 협의 하에 서면 보고 가능
- 최종보고 1회(계약기간 종료 2주 전까지 개최)

라. 하자 책임관계

-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
- 사업비 단가적용,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

마. 소유권

-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,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
-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생태원에 귀속됨
-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용역 완료 후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함

바. 계약의 이행

-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,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
-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,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 또한,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아래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

-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
-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른 계획 및 지침의 변경 등으로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증감이 있는 경우
-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

사. 정산 및 원가검토

- 과업수행자는 용역종료 후 7일까지 정산관련 자료를 원가검토 전문기관(국립생태원의 회계법인)에 확인을 받아 제출
- 최종 정산금액은 용역계약 산출내역서 상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본 용역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집행 및 정산은 국립생태원의 「위탁연구용역의 정산 등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야 함

아. 용역대가의 지급

- 용역대가는 청구에 의거하여 지급
 - 선금 :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(최대 70%)
 - 잔금 : 용역 기간 내 발주기관의 검토를 득한 후 잔금을 지급함

자. 해지조건

-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,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
 - 과업수행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
-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, 본 과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-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과업 일정이 지연되어 과업 기간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차. 기타사항

-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기로 함

5. 성과품 납품

- 감독관은 용역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행기관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야 함
- 최종보고서: 인쇄본 5부(한글 및 PDF 파일 포함)
 - 보고서에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분야 등도 함께 기재
 -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
 - 최종평가에 따라 최종 보완하고, 계약 만료 10일전에 초안을 작성·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 기간 내에 제출해야함
 - 최종보고서, 정산보고서, 조사·분석자료 등 과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첨부하여 메일로 제출
 - 자료 등의 누락·착오·오류 등으로 추가 작업을 할 경우,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
-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